



IONA COLLEGE
TRINITY

TEQSA Provider ID PRV14376 • CRICOS Provider Code 04294D

학생 편입 정책 및 절차

Student Transfer Policy and Procedure

2022 년 5 월 19 일 교무위원회에 의해 이서

2022 년 7 월 28 일 이사회에 의해 승인

1. 목적.....	3
2. 범위.....	3
3. 정책.....	3
4. 절차.....	3
4.1 일반 편입조항	3
4.2 방출을 거부하기 위한 의도	6
4.3 제한기간 후 편입 시작	6
4.4 제한 기간 중 편입 요청에 적용되는 절차.....	7
4.5 이의제기	9
4.6 기록 및 보고.....	9
5. 책임.....	9
6. 정의.....	10
7. 버전 이력	11
8. 추가정보	11

1. 목적

본 정책 및 절차는 외국인학생들로부터 대학으로 또는 대학으로부터의 편입요청에 대한 Iona Trinity College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기관, 아이오나 트리니티 대학. 이하, **대학**)의 접근에 대해 규정한다.

2. 범위

본 정책 및 절차는 국제학생 비자로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대학으로 또는 대학으로부터의 편입요청을 다룬다

3. 정책

대학은 본 정책 및 절차에서 설명된 대로, 특정 제한된 정황이 적용되지 아닌 한, 학생들이 그들의 주된 과정을 최소 6 개월 동안 이수하기 전,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의 과정으로부터 편입을 원하는 국제학생들을 알면서 등록시키지 않는다.

대학은 학생등록 승인 전,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점검을 한다.

국제학생들로부터의 편입요청은 검토되어 신속하게 답변되며, 학생들은 들의 편입요청의 진척사항에 대해 업데이트 된다.

대학에 있는 국제학생이 그/그녀의 주된 과정을 6 개월 동안 이수하기 전,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 대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편입을 승인할 것인지 평가
- 학생을 풀어주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최선이라고 대학이 만족하는 경우, 학생에 대한 어떠한 비용 없이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에게 편입을 허락한다

4. 절차

4.1 일반 편입조항

국제학생에게 특정 정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대학은

- 그들의 주된 과정을 최소 6 개월 동안 이수하지 않은 국제학생들로부터 대학으로의 편입신청을 수락하지 않는다

- 그들의 주된 과정을 최소 6 개월 동안 이수하지 않은 국제학생들의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의 편입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정황들은 아래 4.1.1 항에서 설명된다.

대학에 있는 국제학생들은 그들의 주된 과정을 6 개월 동안 **이수한 후에만** 비용과 대학의 허가 없이 대학에서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대학에서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의 편입을 신청하기 전, 학생은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의 편입이 학생의 비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내무부의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4.1.1 제한기간 중 편입이 허용될 수 있는 정황

아래의 표 1 은 대학으로 그리고 에서 편입이 허용 가능한 정황을 기술하고 있다.

표 1. 제한 기간 내에 학생 편입을 허용하는 정황

대학으로의 편입하기 위한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의 학생의 요청이 수락됨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 편입하기 위한 대한 학생의 요청
학생이 등록된 제공기관 또는 과정이 등록을 중단한 경우	학생이 등록된 제공기관 또는 과정이 등록을 중단한 경우
ESOS 에 의해 학생이 제공기관의 과정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가 제공기관의 등록에 부과된 경우	TEQSA (고등교육을 위해 지정된 ESOS)에 의해 학생이 대학과정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가 대학의 등록에 부과된 경우
학생에 대한 정부 후원자가 편입이 학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간주하고, 편입에 대한 서면 지지를 제공한 경우	학생에 대한 정부 후원자가 편입이 학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간주하고, 편입에 대한 서면 지지를 제공한 경우
방출하는 등록된 제공기관이 학생의 방출에 동의하고 PRISMS 에 시행이과 방출이유를 기록한 경우	그것이 학생의 이익에 최선이기 때문에 대학이 편입 요청을 허가한 경우

4.1.2 학생을 위한 최선의 이익 결정

대학이 다음을 포함하여 학생의 이익에 최선이라고 평가하는 경우, 대학은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의 편입하기 위한 학생의 요청을 허가한다¹

- 만족할 만한 과정 진척도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학생들이 국가규범의 표준 8 (해외 학생비자 요건)에 따라 학생들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개입전략을 활용한 후에도 그들이 공부하는 수준에 만족할 만한 진척도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고된다

- 배려하는 또는 강제하는 이유

몇 가지 예들이 아래에 나타나 있으나, 대학은 지원하는 증빙문서가 제공되는 한, 기타 정황을 평가한다²

- 학생이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는 진단서가 있는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 부모 또는 조부모와 같이 가까운 가족의 사망 (가능한 경우, 사망 증명서가 제공되어야 함)
- 긴급 여행을 요하는 출신국가에서의 중대한 정치적 대변혁 또는 자연재해 그리고 이것이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아래와 같은 비 외상성 경험
 - 심각한 사고에 연루 또는 목격, 또는
 - 경찰 또는 심리학자의 보고에 의해 뒷받침되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심각한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 대학에서의 낙제

대학이 서면 동의서에 설명된 대로 과정을 제공할 수 없거나, 과정에 대한 학생의 합당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학생이 대학 또는 교육대리인 또는 학생의 필요 그리고/또는 학습목표를 충족시키지 않는 과정으로 결과되는 과정에 의해 잘못 인도된 경우.

- 이익제기

¹ 교육, 기술 및 고용부 (현 교육부), 표준 7: 외국인학생 편입 2021 년 5 월 19 일 (링크: <https://www.dese.gov.au/esos-framework/resources/standard-7-overseas-student-transfers>)

² Ibid, pp. 3-4

학생을 방출하는 결정 또는 권고사항으로 나타나는 다른 문제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의 이의제기

4.1.3 학생방출을 거부하는 정황

대학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서는 학생의 방출을 거부한다

- 그들의 편입 요청을 지원하는 거짓 또는 오도하는 정보가 대학에 제공된 경우
-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부터의 완전한 제안의 서한이 대학에 의해 요청된 날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 배려 또는 강제하는 정황에 대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입증될 수 없는 경우
- 학생이 낙제하여 방출될 의도로 대학의 개입전략에 진정으로 전념하지 않는 경우³
- 대학에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
- 학생이 단순히 대학에서 학습에 대해 마음을 바꾼 경우
- 학생의 등록이 불법행위로 인해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4.2 방출을 거부하기 위한 의도

학생의 편입 신청을 평가한 뒤⁴, 대학은 편입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결정이 최종적인 것으로 마무리 되어, PRISMA 를 통해 호주 정부 당국에 전해지기 전, 대학의 내외 이의제기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4.3 제한기간 후 편입 시작

대학에 대한 편입 요청에 있어, 학생은 대학의 입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입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선행 학습에 대한 학점요청은 대학의 학점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입학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의 편입 요청에 있어, 학생 학생등록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대학에의 등록을 중지하여야 한다.

³ 교육, 기술 및 고용부 (현 교육부), 표준 7: 외국인학생 편입, 2021 년 5 월 19 일 (링크:

<https://www.des.gov.au/esos-framework/resources/standard-7-overseas-student-transfers>), p. 3

⁴ 이는 다른 등록된 제공자 출신의 학생들 또는 다른 등록된 제공자로 편입을 요청하는 대학출신의 학생에게 적용된다

등록중단은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이 새로운 등록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PRISMS 에 기록된다.

학생들은 새로운 학생 비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내무부와 연락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4.4 제한 기간 중 편입 요청에 적용되는 절차

첫 6 개월의 주된 과정을 이수하기 전 편입요청을 위한 절차들은 요청이 대학으로 편입 또는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의 편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4.4.1 대학으로의 편입

- ⇒ 학생은 입학정책 및 절차에 따라 입학에 지원하여야 한다. 선행학습에 대한 학점 요청은 학점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 학생의 지원서는 편입 이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전의 등록된 제공기관으로부터의 방출증거, 예를 들면, 방출 통지서
 -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의 과정 승인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증거
 - 관련 ESOS 에 의해 부여된 학생이 과정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제공기관의 등록에 대한 제재의 증거
 - 편입에 대한 관련 정부 후원자의 서면 지지서
- ⇒ 학생서비스 매니저 또는 그의 지명자는
 - 편입 요청과 요청 사유를 평가한다
 -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다
 - 현재 등록상태에 대해 PRISMS 에 조회를 포함하여, 학생이 제한기간 중 편입을 위한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본 정책의 표 1 참조)
 - 대학에서 선택된 과정에 대한 학생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확인한다
- ⇒ 제한 기간 중 학생이 편입 자격이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편입을 거부하는 이유를 포함한 답변이 학생에게 발송된다. 학생은 적절한 경우 제한 기간 후에 다시 지원하도록 충고를 받는다

- ⇒ 학생이 편입 자격이 있는 경우, 학생서비스 매니저 또는 그의 지명자는 입학정책 및 절차에 따라 학생의 편입지원서 검토를 진행한다

4.4.2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의 편입

- ⇒ 학생은 편입 요청을 하기 전 방출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 ⇒ 학생은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의 편입요청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절할 경우, 뒷받침하는 증거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4.1.2 항 참조).
 -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부터의 제안에 대한 유효한 서한이 편입 신청서에 동반되어야 한다
- ⇒ 학생의 편입 신청서 접수 수, 학생서비스 매니저 또는 그의 지명자는
 - 근무일 오(5)일 이내에 접수를 확인하고
 - 학생에게 답변이 근무일 10 일 이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알린다
- ⇒ 학생서비스 매니저 또는 그의 지명자는
 - 편입 신청을 평가하고 제공된 증빙을 검토한다
 - 편입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할 경우, 다른 직원들과 상의한다. 관련 과정조정관 또한 학생의 교육목표에 잠재적인 해가 되는 것에 관해 상담을 해준다
 - 적용 가능한 정책 그리고/또는 법률과 전례를 확인한다
- ⇒ 학생은 다음을 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 추가 정보의 제공
 - 전화, 인터넷 또는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인터뷰에 출석. 학생은 지원 또는 지지를 위해 다른 사람이 인터뷰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학생은 방출 요청의 검토결과에 대한 학생에게 발송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받는다
- ⇒ 방출거부의 경우, 학생은 다음에 대해 통지를 받는다
 - 방출거부 사유
 - 다른 편입 요청을 제기하기 전 제한기간 말까지 기다릴 옵션, 그리고
 - 근무일 20 일 이내에 대학의 이의제기 과정을 이용할 권리.

학생서비스 매니저는 이의제기 과정에서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방출을 거부한다는 결정을 PRISMS 에 기록하지 않는다.

⇒ 방출의 경우,

- 학생의 등록은 중단된다
- 학생에게 발급된 방출 통지
- 방출은 PRISMS 에 기록된다, 그리고
- 수수료 환불과 같이 등록중단과 관련한 과정에 대해 학생에게 알려준다

4.5 이의제기

학생은 학생 이의제기 정책과 절차 규정에 따라 본 정책에 의거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4.6 기록 및 보고

모든 편입 요청에 대한 결과는 PRISMS 에 기록된다.

제한 기간 후 제기된 편입 요청과 관련하여, 학생의 방출은 신속하게 PRISMS 에 기록된다.

제한 기간 중 제기된 편입 요청과 관련하여, 결과가 방출거부이고 학생이 결정통지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대학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이의제기 과정의 결과가 대학을 지지하거나, 학생이 종결 전에 이의제기 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학생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신속히 PRISMS 에 기록된다. 또는
- 이의제기 과정의 결과가 학생을 지지하는 경우, 학생을 방출하기 위한 결정이 신속하게 PRISMS 에 기된다.

모든 편입 신청, 지지하는 문서, 평가 및 결과는 학생의 등록이 중지된 뒤, 최소 2 년의 기간 동안 보관된다.

5. 책임

학생서비스 매니저 또는 지정자는

- 학생에 의해 제출된 뒷받침하는 증거에 입각하여 편입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
- 본 정책 및 절차에 의거 이루어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함한 본 정책과 관련 대한 정책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학생에게 알려준다

교무위원회는 대학의 교수 학습 품질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및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고등교육 제공이 대학의 정책 체제에 따라 이루어지고, 어떠한 불이행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6. 정의

본 정책 및 절차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등록확인 (CoE)	학생 비자 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입학희망 국제학생에게 대학에 의해 발급된 전자문서. CoE 는 대학에 등록하기 위한 국제학생의 자격을 확인해준다
선행학습에 대한 학점	대학에서 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학과목의 수 또는 학점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학생이 이수한 관련된 그리고 동등한 선행 학습 또는 비공식적 학습의 인정
ESOS	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 2000 (ESOS 법)에 따라 각각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그리고 훈련제공기관들을 규제하는 직접적 권한을 가진 고등교육품질표준원 (TEQSA) 또는 호주기술품질국 (ASQA)
국제학생	학생비자, 임시거주 (ESOS 법이 적용되는), 브리징 비자, 잠정거주 (provisional residency)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포함한 외국인학생. 본 정책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학생’이란 국제학생을 말한다
제안서	대학에서 한 과정을 학생에게 제안하는 대학에 의해 발급된 문서
주된 과정	학생비자가 발급된 국제학생에 의해 이수되는 주 과정. 국제학생에게 복수학습과정용 학생비자가 발급된 경우, 주된 과정은 가장 높은 AQF 자격으로 이어지는 과정 또는 가장 빠른 제안된 시작일 또는 가진 기간을 가진 과정이다 ⁵

⁵ 출처: 교육, 기술 및 고용부 (현 교육부), PRISM 에서의 학생편입 관리방법, 2020 년 12 월 14 일
(링크:<https://www.dese.gov.au/esos-framework/national-code-practice-providers-education-and->

PRISMS	ESOS 법의 관리 목적 상, 교육, 기술 및 고용부에 의해 보유하고 유지되는 데이터베이스인 제공기관등록 국제학생관리 시스템
등록된 제공기관	영연방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관 및 과정 대장 (CRICOS)에 등재된 국제학생들에게 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방출	제한기간 중 다른 등록된 제공기관으로 편입하기 위해 대학에 의해 국제학생에게 부여된 허가
제한기간	기재된 정황을 제외하고, 국제학생들이 등록된 제공기관들 간에 편입할 수 없는 기간
학생비자	이민법 1958 에 의해 정의된 대로 호주 시민이 아닌 사람 또는 영주권자에게 호주에서 공부할 주 목적으로 호주에 오도록 허가하는 권한

7. 버전 이력

버전 번호	변경 사항	승인 기관	승인일
1.0	원본 버전	이사회	2022 년 7 월 28 일

8. 추가정보

정책 상태	승인됨
정책 책임자	학장
차기 검토일	승인일로부터 3 년
관련 내부분서	입학 정책 및 절차 학점 정책 및 절차

[training-overseas-students-2018](#)); 교육, 기술 및 고용부 (현 교육부), 표준 7: 외국인학생 편입, 2021 년 5 월 19 일: 국가규정 2018

학생 등록 정책 및 절차

학생 이의제기 정책 및 절차

고등교육 표준체제
(기본표준) 2021

표준 7.2.3

교육제공자와 외국학생의
훈련을 위한 국가 실천강령
2018

표준 7.1 에서 7.7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법적 문서

외국인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법 2000

이민법 1958

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Act 2011

경고 – 인쇄 시 통제되지 않은 문서!본 문서의 현행 버전은 Iona Trinity College of Higher Education 의
웹사이트 itc.edu.au 에 유지되고 있음